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60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김소희
성일종 · 김석기 · 김상훈
김재섭 · 서명옥 · 이소희
강선영 · 서지영 · 곽규택
김정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 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하여 당 선거의 공천 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범망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우회적·구조적인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제3자로부터 기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45조제1항·제2항 신설 등).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금지) ① 국회의원은 소속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자치구·시·군의 장
4.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 ①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금지) ① 국 회의원은 소속된 정당의 후보 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 고 자신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 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 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 후원 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 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서는 아니 된다.</u> <u>1. 지방의회의원</u> <u>2.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 <u>3. 자치구 · 시 · 군의 장</u> <u>4.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u> <u>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u>

제 45 조 (정 치 자 금 부 정 수 수 죄)

<신 설>

<신 설>

① · ② (생 략)

제1항에 따른 후원금을 기부하
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
시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
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의</u>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u>----- ----- ----- -----.
--	--